

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 규정

구 분	내 용	치 분
자격 요건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1. 20세 이상 일 것 2. 운전면허증 소유자 3. 운전경력 2년 이상 운전자 (사업용 여객, 화물차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운전자) 4. 운전적성정밀검사 이수자 - 신규검사: 신규취득자 - 유지검사: 신규, 유지 검사 후 3년이 지난 재취업자 또는 3년 이내 미취업자 - 특별검사: 중상 이상(5주)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자, 도로교통법 누산점수 81점 이상 5. 화물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.6, 별표 2.1의2 및 별표 5. 2. 개별기준 라. (자격요건 미달로 인한 처벌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-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-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수종사자격도 취소 ※ 운전정밀검사 (신규, 유지, 특별검사) 미수검시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
교통 사고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(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)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. 12. (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)
	1.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- 10명 이상 - 5명 이상 9명 이하 - 3명 이상 4명 이하 - 2명 이하	- 감차 조치 (2대) - 감차 조치 (1대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(60일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(30일)
	2.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- 10명 이상 - 5명 이상 9명 이하 - 3명 이상 4명 이하 - 2명 이하	- 감차 조치 (1대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(30일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(15일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(5일)

구 분	내 용	처 분
입.퇴사 보고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1. 입사보고 및 자격증명 신청 - 신청서 (별지 제13호의5 서식) - 화물자격증, 운전면허증 사본 - 사진 1장 (3.5cm X 4.5cm) 2. 퇴사보고 및 자격증명 반납 - 신청서 - 자격증명 원본 반납 ※ 양도양수시 관할관청으로 반납 3. 취업현황 보고 - 매 분기 말 운전자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. 14. 및 별표 3. 9. (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(10일) - 과징금 10만원 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. 9. 및 별표 3. 7. 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) - 위반차량 운행정지 (10일) - 과징금 20만원
유가 보조금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16 (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)	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(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) - 의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 미가입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당해차량 감차 및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

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참 조

선 결			지 시	
접 수	일자		결 재 · 공 람	
	시간			
	번호			
처리과				
담당자				

제 목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 관리 및 교통안전관리 철저 통보

2. 근간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사고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자격 미취득자 등 본 협회에 입.퇴사 보고를 누락하여 운전자 관리가 부실하고, 화물운전자들의 과적방지와 적재물 고정 조치 및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회원께서는 화물운송종사자 관리 철저와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: 1.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 규정 1부. - 끝 -

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이 사 장 심 재 선